

의안번호	제 11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은 2023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1개동 (1,040㎡, 2층 규모, 60억원)을 건립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구축하고자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 받았으나
- 공사 자재비 증액 반영과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시설 추가를 위해 사업비를 당초 12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일반회계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0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사업규모 : 1동(1,040㎡, 지상 2층)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36, 도 24)
 - 시설비 5,236,000천원
 - 감리비 750,000천원
 - 시설부대비 14,000천원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4. 6.
- 규 모 : 부지 3,185㎡, 건축연면적 3,960㎡ (지하1층, 지상5층)
- 사 업 비 : 당초 120억원(국 48, 도 72) → 변경 174억원(국 48, 도 126)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액
총	사 업 비	12,000,000	17,400,000	5,400,000
건 축 비	소 계	9,532,430	13,932,430	4,400,000
	설 계 비	412,500	589,626	177,126
	공 사 비	8,250,000	11,880,000	3,630,000
	감 리 비	825,000	1,336,500	511,500
	부 대 비	44,930	126,304	81,374
건 설 보 상 비		2,299,570	2,299,570	0
인건비 및 운영비		168,000	168,000	0
자 산 취 득 비		0	1,000,000	1,000,000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필지	3,185	2,299,570				
	건물	2개동	5,000	20,100,430				
	기타							
1	토지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0	1,040	6,000,000	2024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신축
	토지							
2	토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일원	3,185	2,299,570	2022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충북개발 공사	
	건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일원	3,960	14,100,430	2024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